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옥외 간판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지시서

2020. 2.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기술원 옥외 간판 개선』 설계 및 제작·설치

2. 과업의 목적

노후화된 옥외간판을 GERI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구미디지털전자정보단지 활성화를 위한 GERI의 혁신 주체 역할을 강조하며 LED방식의 간판 설치로 조도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전력료 절감의 효과도 얻고자 설계 및 제작·설치를 시행코자 함.

3. 과업개요

가. 설치장소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진흥관 옥외 상부

나. 설치규격 : 6.8m × 3.2m × 80mm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예 산 액 : 13,000천원(VAT포함)

마. 계약방법 : 홈페이지 공개 견적 공고

4. 과업수행 기본방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외부에서 효과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위치 및 건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작하여 설치

II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옥외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제작·설치(1개소)

나. 기존 옥외간판 철거 및 폐기처리

다. LED조명(KS)인증제품 사용 및 on-off타이머 스위치 부착 등 에너지 절감 방안 강구

라. 사후관리방안 강구

2. 과업의 세부내용

가. 간판의 제작·설치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가) 과업기간내 기존간판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 완료

나) 간판 디자인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및 상세작업내역 각 1부

2) 옥외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가) 일반기준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일 반 지 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구미시 옥외광고물 조례 범위 내에서 디자인 및 설계
수 량	○ 가로형 간판 1개
재 질	○ 건물의 외부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로 표시 ○ 철재(갈바), 날 글자 채널 문자 간판 ※ 재질 샘플 확인 후 간판 설치
색 채	○ 로고 자체의 색을 야간에도 충분히 표현가능하게 적용 ○ 재질 자체에서 오는 풍부한 느낌의 색채사용을 권장
조 명	○ 절전형 LED조명(12W, 1000개 이상), 문자별smps(300w, 4개)로 설치 ○ on-off타이머 스위치 설치
글 씨 체	○ GERI 자체 로고 서체 사용
벽면이용 간 판 (가 로 형)	○ 건물 외부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베이스판 설치 후 입체형 설치) ○ 글자크기 : 6.8m × 3.2m × 80mm 이내로 표시
기 타 준 수 사 항	○ 베이스판 설치 시 안전성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 기존간판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시 법적사항을 준수하여 처리

※ 일반기준의 간판설치 기준 변경사항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조정

나)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간판 디자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게시틀(가로형간판 설치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 7m 이내로 설치

다) 색상 및 디자인의 다양화

(1) 건축물의 마감재와 조화로운 색상 및 건축물의 규모, 형태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 하되 주변 경관의 자연미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자연적 특성 및 입지를 충분히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체 가로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서체는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로고의 서체를 적절히 표현 한다.

(4) 적색, 청색, 초록색을 정확하게 표현가능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제반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자중 및 풍압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 지주형의 경우 전도모멘트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3) 간판의 바탕재질 및 마감재 등

가) 간판의 주재료는 옥외 환경 조건에서 충분히 견딜수 있는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간판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간판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가) 보행자 및 건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쉽게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구조물의 안전성 등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다) 유지가 용이하고 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가) 건물의 형태를 토대로 간판 재질별 단가, 내구성 및 디자인 등을 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디자인적 측면

- (1) 색채와 소재, 형태적 독창성 및 상징성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2) 간판디자인의 기본패턴을 형성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측면

- (1) 견고한 기본 재질로써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이 용이한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변경, 교체 및 제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경제적 측면

표준규격의 제품 사용 및 안전성과 전력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전력 절감을 하여야 한다.

마) 기능적 측면

가독성 및 시인성 등 외부로의 광고성 극대화 추구

나. 과업추진 관련 행정업무 대행

1)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 대행

- 가) 간판 설치 전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신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준공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나) 수수료 등 관련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2) 필요시 구미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야간경관 및 사후관리방안 강구

- 1) 간판의 야간경관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 건물주(점포주 포함)가 예산범위 내에서 원할 경우 간판에 대한 야간경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3) 용역 완료 후 불만족 사례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 4) 시공된 광고물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1년(무상)으로 한다.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각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건물주에 있는 경우는 유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자의 의무

-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과업수행자는 수행 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5)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 과업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변경 시공토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책임

-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4)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해 기간의 연장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가) 천재지변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 나) 설계변경 사유로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중지를 발주청에서 지시하였을 때
 - 다)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지체 사유가 발주청에 있을 때

다. 기술자 등의 교체

-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 2부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조건

- 1) 발주청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2) 대가(용역비)는 용역결과 제작설치비 증가 또는 용역성과품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보안사항

-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2)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시 용역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발주청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또는 추가자료 발생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 1)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후 과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모든 책임이 귀착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기타사항

-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과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청에 제출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본 과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4) 과업시행에 앞서 필요시 관련부서에 사전협의 및 자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5) 본 과업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 6)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 7)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시는 국내 및 국외의 자료 및 사례를 수집하여 본 과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관련된 물품 확정시(포장 재질 및 색채 등) 확정 예정인 물품이 시공 완료된 선진지를 사전 답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비용

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8) 기존 간판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계획 수립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9) 간판교체시 전기를 이용한 조명을 계획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10) 간판 설계는 자중 및 풍압 등을 고려하여 탈락, 전도 등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안내사항

- 가. 시공 중 설계변경 및 제작설치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나.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라. 간판 제작 예산이 한정된 재원이므로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 가.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간판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공사 시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여야 한다.
 - 마. 옥외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을 건별로 촬영하고 사진첩으로 정리 후 완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간판 제작·설치 완료 후 감독관에게 설치확인서 사인을 받아 준공계, 준공검사원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시킬 수 있다.
- 가. 작업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철거·제작 및 설치를 할 경우
 - 나. 불완전한 작업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간판 철거·제작 및 설치의 지연 또는 작업을 소홀히 할 경우
 -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라.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5. 행정사항 및 기타
- 과업수행 시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만약 과업수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